

# 추록

네친구 경찰학 [추록]은 A4 그대로 인쇄하면  
교재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출력시 참고해주세요.

#### p.99 - (4) 직무대리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 아래 내용으로 교체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훈령)	<p><b>제9조(직무대리의 지정)</b>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p> <p><b>제10조(직무대리의 특례)</b>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에 있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b>제11조(직무대리의 운영)</b> ①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p> <p><b>제12조(직무대리권의 범위)</b>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p>
--------------------------	--

#### p.107 - ►임용심사위원회 - 표 하단 - 아래 내용 추가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p.111 - 3) 휴직 - 의원휴직 ⑤번 - 아래 내용 삭제

- ⑤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3년 초과금지)

#### p.152 -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⑤번 추가

- ⑤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 다만, 이의신청 결과 통지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p.152 - (2) 재심사 - ④,⑤번 추가

- ④ ①에 따른 신청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 포함)를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⑤ ④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 p.160 - 관련판례) 1. - 아래 내용으로 교체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4 채용]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 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 12. 13, 2012도11162). [24 경간]

## p.162 - 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제①항 - 아래 내용으로 교체

### 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경직법 제5조) [19·23승진, 17·18경간]

-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 피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위험한 동물 등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있을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23승진]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19승진]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 입을 우려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19·23승진, 17·18경간]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4.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방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하는 것 [19승진]
- ② 경찰관서장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5채용, 23승진]
- ③ 경찰관은 제1항 조치 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승진]
-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 장은 관계 기관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